5 가지 알아 두어야 할 사항

주거 제공 시 합법적 소득원에 근거한 차별 또는 학대로부터 보호

1 **뉴저지 주 차별금지법(LAD)은 주거 제공 시 임대료 지급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합법적 소득원에 근거한 차별 또는 학대를 금지합니다.** 합법적 소득원에는 섹션 8(Section 8) 주거 선택 바우처를 포함한 연방, 주, 또는 지방 정부 임대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이나 바우처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(COVID-19) 비상 임대 지원 프로그램(CVERAP), 주 임대 지원 프로그램(SRAP) 및 임시 임대 지원(TRA); 그리고 실업 수당, 자녀 양육비, 위자료 및 추가 보장 소득을 포함한 기타 합법적 소득원을 통해 받은 임대 보조금이 포함됩니다.

2 **그러므로 집주인은 세입자가 섹션 8, CVERAP, SRAP, TRA를 통해서나** 연방, 주, 또는 지방 정부 임대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기타 보조금 또는 바우처; 또는 실업 수당, 자녀 양육비, 위자료 및 추가 보장 소득을 통해 **임대료를 지급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거나 임대를 단념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.** 예를 들어, 집주인은 번거로운 서류 작업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하거나, 또는 섹션 8에 따라 요구되는 조사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함으로써 섹션 8 바우처를 가진 세입자를 거부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.

3 **또한, 주거 제공자가** 바우처 또는 보조금 수용을 거부한다고 명시하거나 바우처 또는 보조금에 대한 제한이 표현된 광고를 포함하여 **합법적 소득원에 따라 잠재적 세입자를 어떤 형태로든지 차별하는 임대 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** 예를 들어, "섹션 8 불가", "미안합니다. CVERAP 불가입니다", "TRA 수용 불가", 또는 "본 건물은 섹션 8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"와 같은 진술이 포함된 광고는 LAD에 위배됩니다.

4 **LAD는 또한** 해당 거주지의 다른 세입자들을 포함하여 **합법적 소득원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학대, 차별, 또는 위협적인 행동이나 말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** 만약 집주인이 그러한 학대 행위를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했어야 한다면, 해당 집주인은 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5 **집주인 또는 주거 제공자는** 합법적 소득원으로 임대료를 지급하려고 시도한 것이나 LAD로 보장된 다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**보복할 수 없습니다.**

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신다면, **NJCivilRights.gov**를 방문하시거나, 또는 **1.833.NJDCR4U**로 연락해주십시오

NJ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

NJCivilRights.gov

NJ DIVISION ON CIVIL RIGHTS

@CivilRightsNJ #CivilRightsNJ #StandUpAgainstHate

06/25/21